|  |  |  |
| --- | --- | --- |
| EMB00004c80271a | **TECHNICAL**  **INFORMATION** |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
| Phone :+82-70-8799-8336  Fax :+82-70-8799-8319  E-mail : songwb@krs.co.kr  Person in charge : Song Woobeen |
|  |  |

**No: 2024-IMO-02**

**Date : Feb 20, 2024**

**제목: UAE 선박재활용 규정(UAE Ship Recycling Regulation, UAE SRR)에 따른 의무 시행에 관한 지침**

최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UAE)에서는 UAE 선박재활용규정(UAE SRR)에 관한 지침을 공고했습니다. UAE SRR은 beaching1) 방식 뿐만 아니라 landing2) 방식을 금지함으로써 EU 선박재활용규정(EU SRR)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에서 선박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기국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FMA Circular No.19 of 2023을 참조 바랍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UAE를 기항하는 500 GT 이상 모든 외국적 신조선 및 UAE 국적 신조선의 경우에는 2025년 6월 26일 이후 유해물질목록(IHM)을 본선에 보유해야 하며, UAE를 기항하는 500 GT 이상 모든 외국적 현존선 및 UAE 국적 현존선은 2030년 6월 26일까지 유해물질목록을 본선에 보유해야 합니다.

**1. 적용**

1) UAE에서 운영하는 선박재활용시설

2) UAE 국적선

3) UAE에서 재활용되는 외국적선

4) UAE해역에 있을 때 재활용이 결정되는 외국적선

5) 선박재활용시설로 향하는 동안 기술적인 정지 여부와 상관없이 UAE해역에서 바로 재활용을 위한 최종항해를 시작한 외국적선 또는 선박재활용시설로 향하는 도중에 UAE 항구나 묘박지에 기항하는 외국적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beaching: 수심이 얕은 해안에서 선박을 좌초 시킨 후 끌어올려 작업자들이 선박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2) landing: 선체의 일부분을 육지에 올려서 작업하는 방식, 육상에 위치한 이동식 크레인이나 바지선 위에 위치한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해체함

6) 적용 제외

(1) 500 GT 미만인 모든 선박

(2) 군함, 국가 소유로 운항되는 선박

**2.유해물질목록**

1) 신조선

- UAE 국적 신조선 및 UAE에 기항하는 외국적 신조선은 선박의 구조물 또는 장비에 포함된 UAE SRR Annex II에 명기된 유해물질과 유해물질의 위치 및 대략적인 양을 식별하여 설계, 건조단계에서 유해물질목록(IHM) Part I을 작성해야 함. 또한, 인도 시점에 승인된 유해물질목록(IHM) Part I 및 IHM 증서(또는 적합확인서)를 본선에 비치해야 함.

- 신조선은 아래의 선박을 말하며 설계, 건조단계에서 유해물질목록(IHM) Part I을 작성해야 함.

(1) 2025년 6월 26일 이후 건조계약이 체결되는 선박

(2) 건조계약이 없는 경우, 용골 거치 또는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가 2025년 6월 26일 이후 이루어지는 선박

(3) 2027년 12월 26일 이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선박

2) 현존선

상기 신조선을 제외한 UAE 국적 현존선 및 UAE에 기항하는 외국적 현존선은 2030년 6월 26일까지 또는 이보다 먼저 재활용이 되는 경우 그 전에 승인된 유해물질목록(IHM) Part I 및 IHM 증서(또는 적합확인서)를 본선에 비치해야 함.

**3. UAE SRR과 EU SRR 그리고 선박재활용협약의 주요 차이점**

1) 유해물질목록의 개발과 관련한 EU 선박재활용규정(EU Ship Recycling Regulation, EU SRR)의 요건들은 대부분 선박재활용협약(Hong Kong Convention)에 근거를 두고 있음. EU SRR에 따라 작성된 유해물질목록은 IMO 지침(MEPC.Res.379(80))에 명시된 포맷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유해물질목록에는 EU SRR에서 추가로 관리를 요구하는 물질인 PFOS(과불화옥탄술폰산) 및 HBCDD(브롬화난연제) 두가지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2) UAE SRR에서도 EU SRR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목록에 PFOS 및 HBCDD 두가지 물질을 추가로 관리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두가지 물질을 포함하여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하고 유지관리 및 최신화해야 함. 적용시기 및 차이점은 아래표를 참고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IHM** | **EU SRR** | | | **선박재활용협약** | | **UAE SRR** | |
| **EU 국적선** | | **Non EU**  **국적선** | **신조선** | **현존선** | **UAE 국적선, 외국적선** | |
| **신조선** | **현존선** | **신조선** | **현존선** |
| **적용일** | **2018. 12.31** | **2020.**  **12.31** | **2020. 12.31** | **2025. 6.26** | **2030. 6.26** | **2025. 6.26** | **2030. 6.26** |
| PFOS1) | ○ | ○ | N/A | N/A | | ○ | ○ |
| HBCDD2) | ○ | N/A | N/A\* | N/A | | ○ | N/A\* |

*\* IHM Part I 최초 개발 후, HBCDD을 포함하는 장비의 신규 설치 또는 선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IHM Part I을 유지 관리 및 최신화를 하여야 함.*

*1) PFOS (Perfluorooctane sulfonic acid): 과불화옥탄술폰산*

*2) HBCDD (Brominated Flame Retardant): 브롬화난연제*

**4.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유해물질목록 Part I 및 증서(또는 적합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

1) 신조선

(1) 신조선의 유해물질목록 Part I은 조선소에서 작성하며, 조선소는 승인된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준비하며, 선주는 주관청이나 RO(위임기관)에 의해 최초검사 수검 후 IHM 증서(또는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2) 조선소는 선박의 설계 및 건조 중에 2023 지침서(Res.MEPC.379(80))에 따라 제조자로부터 물질신고서 및 공급자 적합확인서를 수집하여 작성해야 함. 이때, UAE에 기항하는 선박의 경우 UAE SRR에서는 EU SRR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목록에 PFOS 및 HBCDD 두가지 물질을 추가로 관리하는 것을 요구하므로 제조자로부터 물질신고서 및 공급자 적합확인서를 수집할 때 PFOS 및 HBCDD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2) 현존선

현존선의 유해물질목록 Part I은 우리 선급에 등록된 IHM 전문공급자3)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우리 선급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최초검사를 통해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IHM 증서(또는 적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증서 발행을 위한 상세 절차는 다음과 같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우리 선급에 등록된 IHM 전문공급자에 의해 작성되어야 함. 단, Liberia, Marshall Islands 국적선의 경우, 기국이 직접 승인한 전문회사가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작성해야 함.

|  |  |  |
| --- | --- | --- |
| **1단계** | **정보 수집 및 육안/채취 검사 계획서 작성** | **전문공급자** |
| **2단계** | **선상 육안/채취 검사 수행** | **전문공급자** |
| **3단계** | **유해물질목록 Part I 작성 및 선급에 제출** | **전문공급자** |
| **4단계** | **유해물질목록 Part I 승인** | **한국선급 환경배관팀** |
| **5단계** | **최초검사 및 증서 (또는 적합확인서) 발행** | **한국선급 현장검사원** |

승인된 IHM 전문공급자 목록은 우리 선급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함.

<http://e-mesis.krs.co.kr/KeyService/Supplier/En/WKS_CorpAddress_List.aspx>

**5. IHM(EU) 적합확인서를 보유한 500 GT 이상 모든 외국적선이 UAE를 기항하는 경우**

1) EU 국적선은 EU SRR에 따라 IHM Part I에 PFOS 및 HBCDD 물질을 반영하고,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IHM 적합확인서를 함께 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불요함

2) NON-EU 국적선은 IHM Part I에 PFOS 및 HBCDD 물질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승인된 전문공급자에 의해 PFOS 및 가능한 한 HBCDD에 대한 선상 육안/채취 검사를 수행해야 함. 육안/채취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2030년 6월 26일 전까지 IHM Part I을 최신화하고 현장검사원에게 재승인(이서) 받아야 함

**6.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증서(또는 적합확인서)는 보유했지만 IHM(EU) 적합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이 UAE를 기항하는 경우**

IHM Part I에 PFOS 및 HBCDD 물질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승인된 전문공급자에 의해 PFOS 및 가능한 한 HBCDD에 대한 선상 육안/채취 검사를 수행해야 함. 육안/채취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식별되는 경우에는 2030년 6월 26일 전까지 IHM Part I을 최신화하고 현장검사원에게 재승인(이서) 받아야 함

**7. 유해물질목록 Part I 유지 및 최신화**

1) 일반사항

(1) 선주는 기계나 장비 또는 구성요소가 새로 추가되거나, 선박의 수리 또는 개조 시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최신화하여 관리해야 하며, 선주 또는 관리사는 이를 위한 절차 수립 및 관련 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2) 증서 이서를 위한 임시(또는 정기)검사 전에 동일한 부품이나 코팅 등이 설치 또는 적용되 지 않는 한, 모든 신규 설치 항목에 대한 물질신고서(MD, Materials Declaration) 및 공급자 적합확인서(SDoC, 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제조자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본선에 비치해야 함

2) UAE 국적선, UAE를 기항하는 외국적선의 추가 요건

UAE 국적선 및 UAE를 기항하는 외국적선에 신규로 설치되는 항목에 대한 물질신고서를 취합할 때, 물질신고서에 PFOS 및 HBCDD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함. PFOS의 함유량이 10 mg/kg (0.001% by weight) 이상인 항목의 신규 설치 및 사용은 금지됨. 그리고, HBCDD의 함유량이 100 mg/kg (0.01% by weight) 이상인 항목이 신규로 설치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유해물질목록 Part I을 최신화 하고 승인을 위해 우리 선급에 제출해야 함.

**8. 선주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

1) 재활용 예정인 UAE 국적선은 beaching 또는 landing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침투성 바닥재를 가지는 Dry Dock 또는 동등한 기반 시설이 있는 승인된 선박 재활용 시설에서 재활용되어야 함.

2) 선박재활용 시설에서 선박을 재활용할 예정인 경우, 15일 이내에 유해물질목록과 모든 선박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주관청에 통보해야 함.

3) 선주는 승인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조선소 슬롯을 확보하지 못하면 UAE 주관청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음.

4) UAE 기국 선박의 선주는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선박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기국 변경하는 것을 금지함.

동 기술정보는 UAE SRR 관련 지침(FMA Circular No.19 of 2023)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적용 부분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 기국의 이메일 회신 받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UAE SRR은 UAE 기국 자체 지침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국을 통해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 기술정보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동 기술정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협약업무팀([convention@krs.co.kr](mailto:convention@krs.co.kr)): 일반적인 문의사항

- 환경배관팀([piping@krs.co.kr](mailto:piping@krs.co.kr)): IHM Part I, II 및 III 도면승인 관련 문의사항

배부처: 검사원, 선주, 조선소, 제조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